

1. 제안이유

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‘계절근로(E-8)’를 추가하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(대통령령 제34497호, '24.5.7)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확대 근거 마련(안 제7조의2)

환자 진료에 불편·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

나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(안 제45조, 별표1의2)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(대통령령 제34497호, '24.5.7)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

다.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‘계절근로(E-8)’ 추가(안 별표 9)

계절근로(E-8)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*되어 법률상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, 계절근로(E-8)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추가

* 법무부·농림축산식품부 “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” 발표('23.5.30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“심각한 불편”을 “불편”으로, “초래하는”을 “초래하는 등”으로 한다.

제45조 중 “나목2)”를 “나목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 제2호가목 1), 같은 목 2) 및 같은 호 나목 중 “영 제42조제3항 제1호”를 각각 “영 제42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별표 9 제2호 중 “특정활동(E-7)”을 “특정활동(E-7), 계절근로(E-8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) ① (생략)	제7조의2(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“ <u>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</u> 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<u>심각한 불편</u> 이나 지장을 <u>초래하는</u>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	2. ----- ----- ----- <u>불편</u> ----- ----- <u>초래하는 등</u> ----- ----- -----
제45조(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) 영 별표 4 제1호 <u>나목2)</u> 에서 “ <u>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</u> ”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.	제45조(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) ----- <u>나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708